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262/1316-941	(전화번호 2-12-1)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2월 3일 착	
시행일자	84. 1. 27			
보존연한				결재 1984. 1. 17
보 조 기 관	상장계 25 300		협	상장과장
기안책임자	이 중길	84. 1. 28 (금) 병 25	조	임금증
경 우 수 신 참 조	발 ^신 는 ^신 은 ^신 창조	발 신	2 28	1984. 1. 27 기획부 총무과
제목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 건축물기대금 청구			

1. 본 결의: 강남, 삼성 1316-2207 (84.1.26) 호
 2. 기대금 원천: 상설시장 개설 초기에 2회를 아울러
 있어 아래와 같이 절의 학교니 조속 회보하여 주석기 바
 략하라.

기.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 (도면)	정서
○ 사업주체: 행보주택(3) 대출·장래수 입보·등다.	정서
○ 목적: 강남구 대치동 4400평지 외 251평지 부영계획	정서
○ 대금액: 193,883,200원	정서
○ 건축면적: 325,370.82 (전체 15.4%)	정서
○ 아파트: 표준 3,436 세대	반증
○ 총 가격: 1,276,191,200원	반증
○ 사업기간: 84. 5. 15 ~ 84. 10. 31	014

4. 질의 응답

1) 주택 건설: 측면법 제33조와 종법 시행령 제32조의 조정에 의하여 51와 같이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수립 뿐만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로운 판매 시설로 되어 있고, 본 사업 선결 조건에 "앞자리 상가로운 시장 개설 허가를 득한 후 개설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종법 제33조 제④항 제1호의 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장" 시설로 결정 고려된 것으로 가정하고 별도의 조건이 없이 시장법에 의한 허가로만 한 후면 허가 처리가 가능 한지의 여부와 종법률의 울로를 구체적으로 명시 한지 없이 상가로 투자한 경우 이상과는 건축법상 시장으로운 판매 시설과 같은 개념인지 여부 주택 건설 측면법 제33조 제④항 제1호의 조정 2) 주택 건설 사업 수립 뿐만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로운 판매 시설로 되어 있고, 별도의 수신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상가(그로운 판매 시설)이 시장 개설 허가를 신청 할 경우 그 조건 제1) 항의 51이 시장법상 허가 득한 만큼 갖추면 허가 처리가 가능 할지 아니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시계획 시설(시장) 결정을 별도로 빌드 후 처리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의학

1). 질의 1) 향기 배출이 : 주택 건설 흑진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배 이상 ($1,500\text{m}^2$ 이상)로 이어업을 주인 받고, 이와 같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조건이 있다면 풍향을 조제 ④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의 향기 배출 시설 (12m)을 결정된 것으로 보고 시장법상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가능하고 이를 허가 : 사업 주인은 그에게 대행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행정사 향기 배출 허가를 받았을 것을 알기 위한 명령

처지장 흘성이 우려됨으로 최초한 전후방장 독도를 명시
하며 이 된다고 사흘됨.

2) 질의(?) 대화 : 주택건설 측면법 제33조 제①항
과 종제④항의 주장이 의하여 이처럼 계획을 변경 중인 뿐이
아니라 개설 허가를 받도록 허가증권을 부여하면서도 날카로 사흘 데려
온 것은 증가(한반도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유파지장이 행정하고
2.3 침출 간선로 행정지로가 금증금
첨부1. 증발(1316-2220)(14.1.28)호 사진 1부 2글.

수신처. 법무 담당반. 주택기획과

서 울 특 별 시

주 거 452- 55 (724-7051)

수신 상공과장

제목 질의회신

기	상공과장	상공과장	31. 관
716-3082	331	1월	관

1. 상공 1316-94호 (84. 1. 27)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질의한 시장 개설 허가 관련한 귀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과 의견을 회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 31조,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2, 별표 4, 2호 나목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4조에서 주택건설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시장이라는 시설이 별도로 점포 시설이 아니라 상기법, 별 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시설이 고국에서 관광하는 시장법이 되풀이될 경우 별도의 시장시설 허가를 받아야 상당의 를 할 수 있으므로 귀국의 요청에 따라서 상가를 시장 개설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여 하였던 것임

나.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동 시행령 제 32조 제 2항 제 2호에 의거 설치되는 판매시설은 시장법에 의한 시설을 전제한 것으로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사업승인을 한것인바, 당연히 시장 개설을 하여야 할 것임

다. 건축법상 판매시설인 백화점, 시장, 상점과 주택건설촉진법 상 판매시설 (82. 5. 25 이전 "상가")은 그 설치 기준이 다르므로 도시 계획상 지역, 지구 불문하고 대상 세대규모에 맞게 복리시설로 승인 처리 한 것임.



주 지방행정사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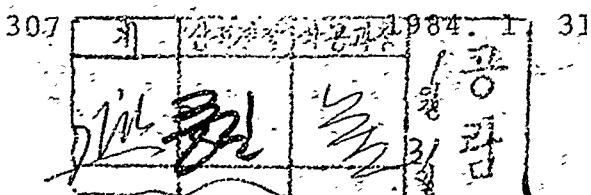


서 울 특 별 서

법무 180- 1/1

수신 상공과장

제목 질의 회답



1. 귀과에서 상공 1316-94 (1984. 1.27)호로 질의한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답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도시계획 결정 절차가 필요없이 관계법에 의한 허가 절차 및 요건을 갖추면 허가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이란 어린이 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장, 집회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사안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없이 "상가"로만 표시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다면 복리시설중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은 되나, 사업계획 승인분서에 승인의 취지를 명백히 파악하여 처리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지방행정사무관 이승돈

법무 담당관